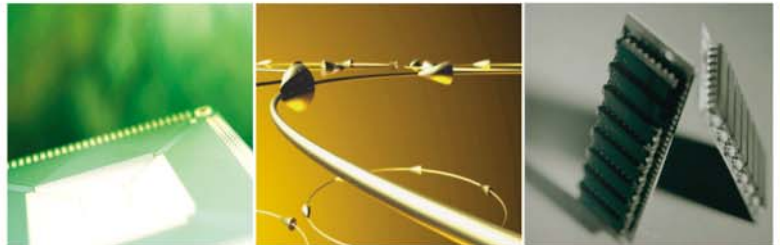


KISDI 이슈리포트

한-EU FTA와 기술표준

남상열 · 김성웅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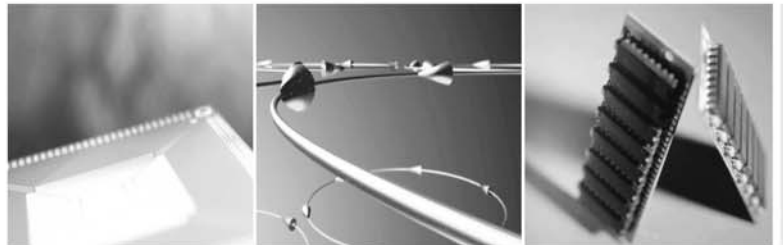
KISDI 이슈리포트

한-EU FTA와 기술표준

2008. 7. 28

남상열 · 김성웅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요약

- 1 개괄
- 2 한-EU FTA 기술표준 관련 주요 이슈
- 3 주요 이슈별 제도적 차이 및 WTO 규정 적용
- 4 WTO 무역기술장벽 동향 및 EU의 무역기술장벽
- 5 환경문제와 기술표준
- 6 결론 및 시사점



남 상 열

- synam@kisdi.re.kr, 02-570-4370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석사
-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제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WTO TBT 위원회 위원, 한국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선임위원, 대외경제전문가풀(KOPIE) APEC 경제기술협력(ECOTECH)분과 위원
- 저서: “무역상기술장벽 분야의 WTO 논의동향과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책연구 05-03), 2005. 9.
“Aid for Trade 분야의 논의동향과 한국의 지원확대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1.
“한-EU FTA가 우리나라 기술표준제도의 선진화와 투명화에 미치는 영향”, KISDI(수탁 07-31), 2007. 12.
“Implications of Liberalizing Korea-U.S. Trade in the Automobile Sector: Potential Impact of the Korea-U.S. FTA”, KEI Seminar on Auto Provisions of KORUS FTA, 2008. 2.

김 성 응

- woongnice@kisdi.re.kr, 02-570-4436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학사
-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한-EU FTA 통신서비스 회기간협상 대표단
- 저서: 「한-EU FTA 통신서비스 협상 주요이슈에 관한 소고」, KISDI 이슈리포트(07-15).
「인도의 통신시장 및 규제제도 현황」, KISDI 정책동향 제20권 3호, 2008. 2.
“한-EU FTA가 우리나라 기술표준제도의 선진화와 투명화에 미치는 영향”, KISDI(수탁 07-31), 2007. 12.

요 약

FTA 체결이 국가마다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동시다발적 FTA 체결이라는 목표아래 다수 국가와의 FTA 체결 및 추진에 진력하고 있다. 유럽 대륙의 제1경제권인 EU와의 FTA 체결은 지난 2007년 5월을 시작으로 7차례 본 협상이 진행되면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그러나, 양측 간의 분야별 협상에 있어 핵심쟁점의 합의가 지연되고 EU의회 및 집행위원회의 유보적인 협상 태도로 인해 조속한 타결 전망은 다소 힘을 잃어 가고 있다. 이에 한-EU FTA 협상 진행과정 속에서 향후 타결을 유도하고 긍정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 주요 의제 및 동향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기술표준 분야는 WTO의 목적상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성격상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도 있기 때문에, FTA 협상 국가간에 첨예한 대립의 각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EU의 경우 기술표준 분야에 있어 선진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외형적으로는 단일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27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국 각각의 제도가 단일하게 수렴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원산지 표시, FTA 이행의 일관성 등 FTA 체결 이후 과급효과가 큰 이슈에 대해 EU측과의 중간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동 보고서는 기술장벽 분야 협상에서 제기된 한국 및 EU 양측간의 정부조달 포함, 제도이행의 일관성, 적합성평가제도 도입, 표시(labeling) 등의 이슈 관련 논의를 살펴보고 양측의 제도적 및 내용적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양측의 이해관계, EU와 회원국의 주권 배분 문제로 인한 이행의 일관성 보장 문제는 상호 조율해야 하며, 적합성평가의 형태 및 도입 시기와 관련한 논란 및 표시문제 등은 양측 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커 협상의 긍정적 마무리를 위해서 협상 마지막 단계까지 서로

조율해 나가야 할 의제로 예상된다.

기술표준 분야는 FTA가 관세협상이 합의된 이후 협상국가간 가장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FTA 체결을 통해 양측간 더 높은 투명성 및 자율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끌 수도 있고, 반대로 더 큰 규제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상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도 기술표준 문제가 심화되면서, FTA와 같은 시장개방의 기회를 통해 상대국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및 EU 양측이 욕심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양측간의 이해가 걸려있는 만큼, 협상은 서로간의 제도적 규범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면밀히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WTO의 목적에 부합하는 FTA 체결이 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표준 분야는 실제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큰 만큼 전체 협상의 실질적 이득과 현명한 조율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2008년 중반이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 상기한 내용의 방향 및 협상 쟁점의 결과에 따라 타결 또는 지연으로 갈 수도 있다. 협상결과의 긍정적 마무리가 가능한지는 협상의 향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개 괄¹⁾

가. 검토배경

- 한-EU FTA 협상이 7차²⁾까지 진행되는 등 향후 고위급 수준에서 해결될 몇 가지 잔여 쟁점을 제외하고 많은 부분이 합의되어 협상이 종반으로 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협상 동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
- EU의 다소 유보적인 태도로 협상이 일시 정지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기술장벽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향후 협상 타결에 대비하여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해 EU와 한국 양측간 차이점을 파악하여 협상력 제고 및 우리 측에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
- 한-EU FTA는 미국이라는 선진 거대경제와의 FTA를 타결한 이후 우리 협상력의 시험대로서, 한-미 FTA와의 비교를 통해 이후 중국, 인도, 일본 등과의 협상에 있어 실질적 토대 마련이 가능
- 기술표준 분야(환경 포함)는 원산지 표시 등 국내적 파급효과가 큰 이슈로서, 특히 EU와의 FTA 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에 대비할 필요성

나.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³⁾

- WTO DDA 다자협상과 동시에 FTA라는 양자협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

1) 강하연·김성웅 외, 한-EU FTA 주요 협상이슈에 관한 소고, KISDI 이슈리포트, 2007. 11, pp.5~11.

2) 회기간협상 2차례, 본 협상 7차례 진행됨.

3) 외교부 FTA 추진 로드맵, 2003. 8, 2007. 4.

외교부 FTA 추진단 홈페이지 <http://www.fta.go.kr>

여 해외시장 개방 및 시장수요 확보에 진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정부정책 차원에서 '동시다발적 FTA 체결'을 목표로 기체결국, 협상진행국, 협상준비국, 공동연구국 등으로 나눠 FTA를 추진하고 있음

(1) 기체결국

- 칠레: 2004년 4월 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 싱가포르: 2006년 3월 발효. ASEAN 시장 교두보
- EFTA: 2006년 9월 발효. 세계 최고 소득수준 국가와의 FTA
- ASEAN: 기본, 분쟁, 상품 분야 6월 1일 발효. 서비스투자 분야 2007. 11. 21 협상 타결. 5대 교역상대 신흥시장과의 FTA
- 미국: 2007년 4월 협상 타결. 국회비준 추진. 최초 선진거대경제권과의 FTA

(2) 협상진행국

- 캐나다: 2005년 7월 협상 개시, 2008. 3 제13차 협상 진행, 북미시장 교두보
- 인도: 2006년 3월 협상 개시, 10차례 CEPA⁴⁾ 협상 진행, 10차부터 FTA로 협상명칭 변경, BRICs 국가와의 FTA
- 멕시코: 2006년 2월 협상 개시, 3차례 SECA⁵⁾ 협상 진행, 2007. 12월 4차부터

4)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CEPA: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임

5) 한·멕시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 SECA: 양국간 공동연구과정에서 FTA 추진을 희망하는 우리와 산업계의 반대에 봉착한 멕시코측 간의 이견을 절충하는 대안으로 멕시코측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간에 FTA의 전 단계로 추진된 사례가 있는 경제보완협정(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ECA)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임

외교부 보도자료,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2100-8127), 2006. 2. 6

- FTA로 협상 재개하기로 합의,⁶⁾ 북중미 시장 교두보
- 일본: 2003년 12월 이후 6차례 협상 진행. 농수산물 분야 양측간 이견으로 2004년 11월 이후 협상 교착
 - GCC: 2007년 11월 사전협의 개최, 2008. 7 제1차 협상 개시, 신흥 유망시장 및 자원부국과의 FTA
 - EU: 2007년 5월 협상 개시, 7차례 본 협상 개최, 금융통신 등 서비스 분과 2차례 회기간 협상 개최

(3) 공동연구국

- 중국: 2007년 3월 공동연구 개시. 5차례 공동연구 개최. 1위 교역상대국
- MERCOSUR: 2005년 5월 공동연구 개시. 4차례 공동연구 완료. 2007년 11월 무역자유화 공동연구 보고서 공식 완료,⁷⁾ 협상출범 검토중. BRICs 국가와의 FTA
- 호주: 2007년 5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4차례 공동연구 개최.
- 뉴질랜드: 2008년 4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2008. 5. 한-뉴 정상회담시 한-뉴 FTA 정부간 예비협의 개최에 합의

6) SECA를 한 단계 높여 정식 자유무역협정(a full 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하기 위한 양자 통상협상을 재개하기로 공식 합의함

외교부 보도자료, 외교부 대변인, 2007. 8. 9

7) 2007년 11월 정책협의회 계기에 한.MERCOSUR 무역협정(TA: Trade Agreement) 공동연구 보고서를 공식 채택함. 동 보고서는 각국 정부 및 학계가 참여하여 중남미 최대 지역 경제협력체이자 회원국의 경제규모 및 발전정도가 상이한 MERCOSUR와 한국과의 무역 자유화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연구하여, 향후 양자간 FTA 추진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

※ 무역협정(TA): 교역확대를 위해 둘 이상의 국가가 체결하는 협정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자유무역협정이나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등 구체적인 형태를 전제하지 않은 것임

다. 한-EU FTA 협상 진행현황⁸⁾

(1) 참여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에 따른 단계적 한-EU FTA

-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상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거대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한-EU FTA를 지속적으로 검토
- 한-EU FTA 협상은 2007년 5월 서울에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7월 및 9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각각 2차 및 3차 협상을 진행하였고, 10월 서울에서 4차 협상, 11월 벨기에에서 5차협상, 2008년 1월 서울에서 6차 협상 및 지난 5월 다시 벨기에에서 7차 협상을 개최함
- 외교부는 올해 상반기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였으나, EU 측의 유보적 태도와 주요 이슈의 합의 실패로 하반기 또는 내년 타결을 예상함
 - 2007년말 EU의회 권고사항에 의하면 EU집행위 보고서 전까지 FTA 체결을 늦출 것으로 권고하여 참여정부에서 타결에 실패함⁹⁾
 - 한미 FTA 의회 비준 결과에 따라 한-EU FTA의 협상 타결 시점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임¹⁰⁾

8) 외교부 보도자료, FTA교섭총괄과(제07-726호), 2007. 11. 16.

9) 유럽의회는 한국 조선업체들의 가격 덤핑 문제에 대한 제동장치 마련 요구 및 한국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국 포함 촉구 등 새로운 쟁점들을 제기하면서 협상 타결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유럽의회 내 상임위원회 승인 문서 A6-0463/2007). “EU집행위의 SIA보고서 제출 전까지는 체결하지 말라”, “인위적 협정 데드라인은 이익균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우리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12. 4일자 보도

10) 정인교, 한미 FTA 협정 내용, 경제효과 및 정책시사점, 자유기업원 CFE 리포트, 2008. 5. 30.

(2) 협상 경과¹¹⁾

차수	시기	내 용
한-EU FTA 출범 결정	2007년 5월 1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출범 공식 선언: 2007년 5월 6일 한-EU 통상장관회담
1차협상	서울, 2007년 5월 7일~11일	- 상품, 서비스/투자 등 4개의 분과를 설치하고, 필요시 기술적·세부적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분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합의 - 기술장벽 협상에서 초안에 근거하여 양측 기본 입장 교환 및 전기전자, 자동차 관련 비관세장벽문제 논의 준비
2차협상	벨기에, 2007년 7월 16일~20일	- 상품·서비스·정부조달 개방안 교환 및 협의 - 라벨링, 수수료 등에 대한 논의, 공급자적합성선언(SDoC) 도입 논의
3차협상	벨기에, 2007년 9월 17일~21일	- 우리측의 수정된 상품양허안, 설립(투자) 및 금융서비스 양허 초안을 기초로 본격적인 양허협상 개최 - 기술장벽 협의채널 구축, 라벨링 및 환경규제 논의 지속, 점진적 SDoC 논의
4차협상	서울, 2007년 10월 15일~19일	- 분야별 통합협정문과 양허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
5차협상	벨기에, 2007년 11월 19일~23일	- 상품양허와 관련, EU측이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양허개선을 전제로 우리로서도 한미FTA 수준을 참고하여 우리의 양허를 개선하되, 우리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예외적 취급을 확보해 나가는 등 양측간의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최대한 현실적인 합의점을 모색할 계획 - EU 원산지 표시 등 잔여쟁점 외에 상당부분 합의
6차협상	서울, 2008년 1월 28일~ 2월 1일	- 대부분의 분야에서 사실상 완전히 합의된 문안을 도출하는 등 상당한 진전 - 무역규제, 분쟁해결, 투명성, 지속가능발전, 경쟁 분야는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거나 문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등 사실상 협상이 종결

11) 외교부 보도자료, FTA교섭총괄과(1차~7차협상결과).

차수	시기	내 용
6차협상	서울, 2008년 1월 28일~ 2월 1일	- 지적재산권, 상품무역협정, 기술무역장벽(TBT), 동식물위생조치(SPS), 비관세조치 신속해결절차는 일부 핵심 이슈를 제외하고 타결
7차협상	벨기에, 2008년 5월 12일~15일	- 일반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이견을 해소하고 원산지, 비관세조치, 지리적 표시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도 진전 - 자동차 관세 및 표준 문제는 양측간 이견이 계속 침체하게 대립되었으며 서비스 분야에 대한 EU측의 KORUS plus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여 이견이 계속됨

라. 한-EU FTA의 의의¹²⁾

(1) 미국 이후 세계최대 거대 경제권과의 FTA

- 한-미 FTA 이후 중국, 일본 이전에 또 하나의 거대경제권과의 FTA
 - EU는 우리나라 제2위 교역상대국으로, 제2위 수출국이며, 중국, 일본, 미국 다음의 제4위 수입국
 - ※ 총교역은 중국(19.7%), EU(12.9%), 미국(11.8%), 일본(11.5%) 순(〈별첨〉 한국의 5대 수출입 상대국과의 교역현황)
 - 우리나라는 EU의 제8대 교역상대국
 - ※ 대 EU 수출은 365.1억불로 전년대비 18.9% 증가. 대 EU 수입은 240.4억불로 전년 대비 23.0% 증가(〈별첨〉 한-EU 교역동향)
 - EU는 제1위의 한국 투자국이며, 우리나라의 제3위 투자 대상국
 - ※ 2006년 말 기준 EU는 총 404.5억불 한국 투자. 한국은 137.9억불 EU 투자 (〈별첨〉 한국의 대EU 투자, EU의 대한 투자)

12) KISDI 정책동향 제19권 14호, 김성웅, 2007 美무역장벽보고서에 제기된 EU의 통신시장 무역장벽, 2007. 8.

강하연·김성웅 외, 한-EU FTA 주요 협상이슈에 관한 소고, KISDI 이슈리포트, 2007. 11.

- 한미 FTA 협상으로 축적된 '협상력의 시험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 미국이라는 거대선진국과의 본격적인 협상 경험을 통해, 협상테이블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더 나은 협상 전략 시험
 - 이를 통해, 향후 진행될 주요 협상 대상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분야의 개방화 실현 가능

(2) 대륙거점 확보

- EU와의 FTA는 우리에게 FTA 네트워크 형성을 완성해가는 교두보
 - 한-미 FTA(미주), 한-싱가폴(ASEAN), 한-칠레(중남미)에 이은 유럽 대륙의 FTA 네트워크 구축
- 대륙별 FTA 형성을 통해 대륙으로의 수출 통로 확보라는 동시다발적 FTA 체결 목적에 부응
 - 한국의 EU 시장 점유율은 2004년 2.93%에서 2005년 2.8%로 0.13% 감소. 특히,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EU와의 교역이 증가 추세
- 경제적 과급효과 획득
 - EU와의 FTA는 가시적인 GDP 증가 및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잠재적으로 시장 점유율 증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 생산성 효과 고려시 실질 GDP 6% 증가, 고용 43만명 이상 증가(〈별첨〉 한-EU FTA 경제적 효과)

2. 한-EU FTA 기술표준 관련 주요 이슈¹³⁾

가. 정부조달

(1) 정부조달 관련 주요 의제

- EU측은 WTO TBT협정의 범위를 넘어 정부조달을 TBT챕터(chapter)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입장

나. 표시(labeling)

(1) 표시 관련 주요 의제

- 재정목적(fiscal purpose)의 labelling 금지
 - EU측은 소비자 관련 labelling에 한정할 것을 요구하고 과세목적을 위한 (fiscal purpose) labelling 등은 요구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례가 한국 내에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
 - EU측은 관련 사례로 주류에 붙이는 '가정용', '할인매장용' 등의 매장구분 labelling 폐지를 언급함
 - 우리측은 EU의 주장이 WTO TBT 협정에서 허용하는 규제권한(기만적 행위방지)까지 제한함을 주장하고, 주류의 용도별구분표시는 소비자 관련 labelling은 아니지만 기만적 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

13) 남상열·김성웅 외, 한-EU FTA가 우리나라 기술표준제도의 선진화와 투명화에 미치는 영향, KISDI (기표원 용역보고서), 2007. 12. pp.22~27.

- Made in EU 원산지 표시 허용
 - EU 측은 한 제품이 여러국가에 걸쳐 제조되는 경우 원산지를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라벨에 EU를 원산지 표시로 하기를 희망
 - 우리측은 EU의 원산지 표시가 제조/공급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바 우려가 있으며, 또한 소비자 보호에 저해됨을 표명

다. 제도이행의 일관성

(1) 주요 의제

- EU 영역 내에서 기술규정이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
- EU측은 EC조약에서 각국에 허용하는 재량권을 침해할 수 없으나, EU 회원국 간 제도운영의 일관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는 수준은 가능하다는 의견

라. 적합성평가

(1) 주요 의제

- 새로운 적합성평가절차 도입시기
 - 양측은 적합성평가 관련 제도 형태가 상이하므로 적합성평가절차의 도입과 관련하여 그 시기와 함께 과도기간의 설정 등이 중요
 - 기존 법령개정 기간과 우리 기업에 대한 교육 및 적응 기간이 필요하므로 적절한 과도기간 설정이 합의될 필요
- 적합성평가 형태
 - 양측의 제도적 형태의 차이점을 인식하여, 한국의 안전인증기관과 양해각

서(MOU)를 체결한 EU 기관의 자율안전확인품목에 대한 시험결과를 수용하고, 시험결과와 적정성 확인을 위한 시험성적서 제출 및 검토절차 유지 등의 형태가 적절함

- 과도기간 동안의 적합성평가
 - 우리 입장에서는 자율안전확인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과도기간 동안 현행 안전인증제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
- SDoC 도입검토
 - 우리측은 EU가 제시하는 SDoC 도입 노력과 관련하여, 사전적으로 정해진 시험이 아닌 융통성 있는 시험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마. 검 토

- 상대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labelling은 다자간에도 합의된 세부원칙이 없으며 아직 협상 중에 있고 양측간 합의된 내용이 아니므로, 다음에서는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며, 나머지 이슈도 한-EU 양측의 제도적 차이 검토에 중점을 둠

3. 주요 이슈별 제도적 차이 및 WTO 규정 적용¹⁴⁾

가. 정부조달

(1) 한-EU 양측의 이해관계

- 정부조달분야에 TBT협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경제적 이해의 득실 여부는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을 파악한 후 결정될 사안이나, 기본적으로 선진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에 관한 양허는 한-미 FTA의 경우에서 보듯이 우리 산업 부문에도 중요한 혜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즉, 현재 EU측의 요구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진입을 시도하는 차원의 제안으로 판단되며, 우리의 경우에는 브라질, 인도 등과는 다르게 향후 실질적으로 EU의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해득실 여부에 과도하게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정부조달에 적용이 되더라도 우리 기업에 주는 영향은 일반분야와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우리의 경우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표준정책 시행시 최근 민간차원의 표준 선정을 강조하고 촉진하는 정책기조가 두드러지는 바, TBT 협정의 정부조달 적용 규정 하에서도 정책운용상 문제의 소지는 적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정부조달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기술규정이나 표준 도입 시 위 규정과 같은 조항의 도입은 시장이나 민간차원의 역할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긍정적 측면이 있음

14) 남상열·김성웅 외, 한-EU FTA가 우리나라 기술표준제도의 선진화와 투명화에 미치는 영향, KISDI (기표원 용역보고서), 2007. 12. pp.27~34.

(2) WTO 규정의 해석 적용

- TBT협정은 정부조달 분야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적용 예외 분야로 규정하고 있는데 EU는 정부조달 분야에까지 TBT협정을 명시적으로 확대적용하고자 하고 있음. 이는 2006년 10월 발표된 EU의 신통상정책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부조달분야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주요 쟁점분야로 제기한데 따른 협상안으로 판단됨
 - TBT협정 제1조4항은 정부조달협정(GPA)과 관계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음. 동 조항을 통하여 TBT협정은 정부기관의 생산과 소비를 목적으로 설정되는 구입(조달)품의 기술규격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임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그와 관련하여서는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음. 또한 TBT협정의 동 조항은 해당 WTO회원국이 정부조달협정의 체결국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정부조달 챕터에서 특성과 목적에 맞게 TBT 협정 관련 문안을 보완, 인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TBT협정을 정부조달부문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 도입을 위한 명료화 작업이 필요

나. 표시(labeling)

(1) EU의 표시제도 및 관행

- EU 식품 표시제도
 - EU 집행위는 2008년 1월 30일 식품 라벨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음. 이 규정은 기존 식품 관련 법규인 '식품 라벨링 지침(2000/13/EC)'과 '식품의 영양에 대한 라벨링 지침(90/496/EEC)'을 하나로 통합하고 간소화하는 동시에 기존 규정 내용도 수정·강화한 것임
 - EU는 식품라벨링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였는 바, 신 규정은 EU 역

내산은 물론이고 수입제품에도 적용되므로 우리 식품 수출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¹⁵⁾

○ EU 원산지 표시제도

- 원산지 표시와 관련, 현행 지침과 같이 신규 지침 안에서는 원산지 국가(country of origin)나 출처(place of provenance)의 표시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 제조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표시여부가 결정됨. 단, 원산지 국가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잘 못 인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그러나 제조자가 원산지 표시를 원할 때는 국제 규정(WTO와 Codex)에 입각해야 하며 성분 원산지와 완제품 가공지가 다를 경우에는 이를 표시해야 함

(2) 한국의 주류 표시제도 및 관행

- 우리나라의 주류매장 구분 라벨링 관행은 EU측이 제기한 기만적 목적의 라벨링에 해당하지 않음
- 주류에 붙이는 '가정용', '할인매장용' 등 유통경로를 표시하는 것은 오히려 기만적인 행위를 방지하며, WTO TBT 협정상 합법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임

(3) WTO 규정 합치성

- 재정목적의 라벨링 문제는 WTO TBT협정상 합법적인 규정으로 유지될 수 있는 조치임
- 즉, 국내 시장에서 주류 판매의 경우 국내 주류제품과 수입 주류제품에 대

15) KOTRA 브뤼셀 무역관, EU 새로운 식품라벨 규정 마련(표기의무 성분과 표기방법 의무화, 규정발효 3년 후 실제 시행), 2008. 2. 14.

해 차별을 두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바(TBT협정 제2조 1항), 과세정책상 이유와 소비자 기만 방지 및 시장질서 유지 차원의 합법적 조치로 인정될 수 있음(TBT협정 제2조 2항)

- 더욱이 동 조치의 시행에 관련되는 수출자의 추가적인 비용이 사실상 크지 않으므로 동 조치에 의한 무역이행에 대한 피해를 입증하기도 어려움. 유통 구조를 사실상 분리함으로써 일부 유통과정에서는 재고 관리 또는 유지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비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우리 제도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한 동 제도의 WTO규범 합치성은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결국, 용도구분표기는 국내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는 수출업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Made in EU 원산지 표시 허용 검토

- 실제로 EU 역내에서 유통되는 EU 역내국가의 제품에 원산지가 EU로 표기되지 않는 한, 우리측에서 Made in EU를 수용할 필요가 없으며, 개별 생산국에 대한 명확한 labelling이 있어야 할 것임. 만약, Made in EU가 허용이 된다면 우리 기업의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
- 현재 EU는 기존의 12개 신규가입국을 포함하여 27개국으로 확대된 상황인 바, 유럽산 제품이 개별 회원국별 산지로 인식되지 않고 전체 “EU産”으로 표기되는 경우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유럽산 제품의 소비자 인식 제고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가 있을 것임
- 특히, 신규회원국들을 활용한 EU 역내부품 공급이나 가공을 촉진시켜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유럽산 상품을 포괄적으로 “Made in EU”로 규정함으로써 상품의 신뢰도나 인지도에 있어 반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brand power를 결정함에 있어서 원산지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원산지에 대한 명확한 명기 없이 단순 광범위한 표기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 혼선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기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 프랑스의 경우 자국산 와인의 원산지 표시를 단순히 Made in France로 하지 않는 이유는 지역이 가지는 brand power를 충분히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EU 측에서 자신의 입맛에 따라 원산지를 구체적 국가명으로 하든가 광범위하게 Made in EU로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임. 만약 EU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면 France산 와인에 대해서도 단순히 Made in EU로 하도록 해야 함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의 “Made in EU” 규정은 큰 경제적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 바, 신중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EU측이 공산품과 같이 ‘회원국 간의 차이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Made in EU 원산지 표시를 허용해 달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소비자 정보 제공 및 기만적 행위방지(TBT협정 제2조 2항)에 관련된 사안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허용되서는 안됨. 즉, 소비자들은 비록 공산품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특성을 가진 EU의 개별회원국별 원산지에 따라 시장에서 제품을 차별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 한국 소비자들은 농산품 뿐만 아니라 공산품의 원산지에도 매우 민감함. 즉, 유사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원산지 국가(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에 따라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가격차이가 크며, 또한 상당한 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원산지 제품이 품질과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강한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단지 한국 소비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임. 예를 들어 애플이나 나이키 사의 제품이 상당 부분 개도국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품에 원산지 외에 디자인/설계 국가(country of origin)를 미국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음
- 실제로 EU 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Made in EU’를 포기한 적이 있음
- ※ EU집행위는 HLG의 보고서에 따라 ‘Made in EU’라는 새로운 라벨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했으나 2004년 6월 소비자자문단체(ECAG)가 그러한 라벨링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해 강제 라벨링 제도에 대한 도입계획안을 포기한 바 있음¹⁶⁾

다. 제도이행의 일관성

(1) EC 조약 규정의 해석

○ EC Treaty 제133조

- EU 집행위원회(Commission)와 각료이사회(Council)가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협상하여 체결하는 통상관련 협정은 EU의 내부정책과 규범에 합치하여야 하며, 그러한 통상협정의 체결을 위해 협상 개시의 필요가 있는 경우 각료이사회(Council)에 권고안(recommendations)을 보고하고 각료이사의 협상 개시 승인을 받아야만 협상 개시가 가능함
-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승인을 받아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제133조 특별위원회(133 Special Committee, EU의 각 회원국이 파견한 위원들로 구성됨)에 협상 경과를 보고해야 하고, 특별위가 발동하는 지침(directives)의 범위 내에서 협상을 수행해야 하며, 이와 같은 directives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침을 정해 두는 것이 아니라 각 통상 협정별 협상을 대상으로 작성되고 채택됨

○ EC Treaty 제133조 제3항

- 집행위원회가 EU의 내부 정책 및 규범, 각료이사회가 승인한 협상지침(negotiating directives, 이하 “ND”) 및 특별위가 발동하는 개별 협상지침(이하 “특별위 지침”)의 범위 내에서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러므로 EU 각 회원국과 그 지방정부의 기술규정 운영의 통일성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는 일관조항을 한-EU FTA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2007년 4월 23일자로 EU 각료이사회가 승

16) 포르투갈 섬유산업회 면담 종합, EU, 수입제품 원산지 표시제 본격 논의될 듯, 2005. 11.

- 인한 한국과의 FTA 추진에 관한 협상 mandate를 담고 있는 협상지침(negotiating directive, 이하 “ND”)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임
- 우리 정부가 ND 및 특별위 지침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 또는 확인해 본 결과 ND 및 특별위 지침에서는 일관조항을 한-EU FTA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식의 명시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일관조항을 한-EU FTA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천적으로 EU 법령 및 정책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임

(2) EU와 EU 회원국간 일관성 구속문제

- EU는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개별 국가가 상호 합의한 영역에서 동일한 국가로 행위하고 동일한 국가로 취급받게 되는 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U 각 회원국은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비해서 상당한 범위의 주권을 보장받는 존재임. EU의 경우는 EU 각 회원국 전체(지방정부 포함)에 일률적인 규범을 적용하는 harmonization은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으며, EC Treaty에 이러한 정신을 반영한 조항이 곳곳에 산재함

*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이 다른 참고자료에도 나와 있음

- EU가 제3국과의 국제협정을 체결할 경우 세 가지 범주로 나뉘는 바 1) 공동체 단독으로 타국제법주체와 체결하는 국제협정이며, 동 방식은 협정 내용이 전적으로 공동체의 조약체결권 내에 드는 경우임. 2) EU공동체와 EU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혼합협정(mixed agreement)으로서 협정 내용이 일부는 EU 공동체의 대외적 권한에 속하고 일부는 여전히 개별 회원국들의 대외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 당해 협정은 ‘EU공동체, EU회원국들’과 제3국간에 체결됨. 3) EU공동체 참여 없이 회원국 개별적으로 제3국과 체결한 국제협정¹⁷⁾

17) 김대순, 국제법론, 2002(제7판), pp.1017~1018.

- FTA와 같은 통상 협정은 그 성격상 공동체 단독으로 체결하는 1)번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으나, 기술표준, 적합성평가 분야는 2)번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개별국가는 국가로서 주권적 권리를 부여받게 되므로 harmonization의 강요에는 제약이 있음

- EC Treaty의 제133조에도 이러한 원칙이 나타남(아래 참조)

※ 공동통상정책에 대한 EC조약 133조는 니스조약에 따라 개정되어 통상분야에 대한 EC의 조약체결권(양자 및 다자를 불문)을 다음과 같이 재조정

- 상품무역협정: 133조 1항~4항이 적용되는 통상협정으로 EC가 배타적 권한 보유
- 서비스무역협정: 133조 1항~4항이 적용되는 통상협정이나(133조 5항 1단) 서비스분야에 따라 조약체결권이 상이
 - 문화 및 시청각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 및 보건서비스는 EC와 회원국의 공동권한(shared competence) 분야⇒혼합협정(133조 6항 2단) [따라서 EC와 회원국은 모두 WTO협정에 가입함]
 - 기타 서비스분야는 EC의 배타적 조약체결권 분야
- 지적재산권협정:
 - 통상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과 FTA 지적재산권 Chapter 등)은 133조 1항~4항이 적용되는 통상협정으로(133조 5항 1단) EC가 배타적 권한 보유
 - 일반 지적재산권협정: 이사회가 위원회의 제안과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행위할 경우 133조 1항~4항을 적용할 수 있어(133조 7항), 이 경우 EC가 배타적 권한 보유
- 운송분야에 대한 조약의 교섭 및 체결은 EC조약 V부(Transport)와 300조에 따름(133조 6항 3단)
- 상기의 어떠한 조약이라도 EC의 역내권한을 넘는 규정을 포함할 경우에는(특히, EC조약이 회원국의 법규의 조화를 배제시킨 분야에서 이러한 조화를 초래하는 규정) 이사회가 동 조약을 체결할 수 없음(133조 6항 1단)

- 예컨대 상품 분야의 무역자유화 관련 협정은 각료이사회에서 과반수 결의보다 요건이 가중된 특별결의로 체결할 수 있지만, 상품 무역자유화와 무관한 순수한 서비스 무역자유화나 지적재산권의 상업적 국면을 포함하는 통상협정은 반드시 각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되어야 체결이 가능함
- 특히 EC Treaty 제133조 제6항은 EC Treaty가 일관성을 배제하고 있는 분야에서 EU회원국의 법령을 통일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조항을 포

함하고 있는 협정은 체결되어서는 안 됨을 명백히 규정함. 그 전형적인 예로 문화 및 시청각 서비스, 교육서비스 및 복지 및 건강(의료) 서비스 무역 관련 협정은 협상과 체결 모두 반드시 EU의 모든 회원국과 EU가 공동으로 하여야 함을 규정함

- 기술관련 규정의 harmonization이 EC Treaty 제13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EU각료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의로 승인되어야 할 조항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며, 기술장벽협정 소관 분야가 EC Treaty가 harmonization을 배제하고 있는 분야인지 여부도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EC Treaty는 공동시장(common market)의 형성 및 역내 경쟁조건의 왜곡을 배제하기 위한 법령의 일치(approximation of laws)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등¹⁸⁾ 상품무역 분야에서는 오히려 harmonization을 엄연한 원칙으로 삼고 있으므로, 상품 분야의 기술장벽협정이 EC Treaty상 harmonization을 허용하지 않는 분야라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EU 집행위원회의 “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¹⁹⁾의 내용 중에는 장래 FTA 체결시 비관세장벽 문제를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면서, 기술규정의 투명성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율(horizontal disciplines)은 FTA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로서 적어도 각 규제당국이 입법 준비가 되었음을 선언한 후에야 추진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부분이 존재함
- 이러한 점에 근거할 때, ND나 특별위 지침에서 일관조항에 관하여 전혀 언급이 없다 하여도, 기술규정 중 투명성 관련 부분을 포함하여 harmonization을 허용하지 않는 EU의 내부규정 정책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EU측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²⁰⁾

18) EC Treaty Title VI(Common Rules on Competition, taxation and approximation of laws) 참조

19) EU가 기존의 다자간 무역협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던 통상정책에서 선회하여 한국 등과 FTA를 공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정책적 전환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히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 분야는 ‘완전한 조화(total harmonization)’ 분야가 아니므로 EC Treaty 95조 5항, 6항에 의거하여 개별회원국은 자국의 법규를 유지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규정의 일관성 조항은 EU 역내 법규의 조화 의무가 배제된 분야에 해당되어 133조 6항에 따라 EC의 단독 권한이 부인되고 EC와 회원국의 공동 조약체결권이 인정되어 혼합협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여짐
- 다만, 해석상 EC는 역내무역의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역내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국내조치에 대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화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고, 우리측 주장은 전술한 바와 같이 상품무역협정상의 조항에 해당되어 133조 1항~4항이 적용되는 EC 단독 체결권 사항에 포함되며, 동시에 양국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규정의 일관성 요구 조항으로 간주하면, EC도 동 내용에 대해 단독 조약 체결권을 보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라. 적합성평가 도입

(1) EU의 적합성 평가제도

- EU 역내 단일시장이 출현하면서 최소의 정부규제와 새롭고 단일화된 제품 규정 및 규격을 요구하게 되는 한편, 기술의 단일화 지침의 적용을 위한 입법 절차가 절실하게 됨에 따라 ‘New Approach Directive’가 만들어짐
- EU 역내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되는 모든 제품(신제품, 중고,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등 포함)을 대상으로 사람, 가축 등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출시를 금지함
- EU 역내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은 관련 지침의 필수요건(essential require-

20) 제95조는 EC회원국 간 내국세면에서 내국민대우보장에 관한 것임. 제175조는 유럽의회, 이사회(council), 위원회(commission)가 EC Treaty를 위반한 경우 개별회원국/기관이 청원할 수 있음

- ment)을 충족하여야 함
- 지침에 부합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
 - EU 역내에 출시하려는 모든 제품들은 적합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관련 표준 및 지침에 부합한다면 CE마크를 부착함
- EU는 1980년대부터 공급자적합성평가(SDoC)를 도입 및 발전시켰으며,²¹⁾ 이를 지침(DIRECTIVE 2006/95/EC, Council Directive 89/336/EEC 등)으로 보장하는 등 법적·제도적 구축이 잘 된 상태임
- 현재 EU는 전자·전기 분야와 관련하여 동 제도의 최고 단계인 SDoC Type IV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시험실시 및 시험결과 등의 등록 모두 면제)를 채택하고 있음. 즉, 생산자 혹은 그 대리인은 자유롭게 인증기관을 선택하고 품목에 따라 8개의 모듈(〈표 3-1〉 참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합성 평가 및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함

〈표 3-1〉 설계와 생산 별 모듈 설명

	설계단계 (design phase)	생산단계(production phase)	CE
	생산자 (manufacturer)	모듈 A(내부생산관리, internal control of production)	
모듈 B (형식검사, EC-type examination)		모듈 C(형식적합성, conformity to type)	
		모듈 D(생산품질보증, production quality assurance)	
		모듈 E(제품품질보증, product quality assurance)	
		모듈 F(제품검증, product verification)	
모듈 G(단위검증, unit verification)			
모듈 H(전체품질보증, full quality)			

자료: 중소기업을 위한 전기전자 제품의 환경배려 설계 국제표준가이드, www.kats.go.kr,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www.ts.nist.gov, Guidance to the Implementation of directives based on the New Approach and the Global Approach, European Commission에서 정리

21) Per Döfnäs, "A manufacturer's experiences: Transition to SDoC in the IT/Telecom sector in the European Communities," WTO TBT Workshop on SDoC, 2005, <http://www.wto.org>.

(2) 한국의 적합성 평가제도

- 우리나라의 경우, 오랫동안 정부주도 하의 3자인증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SDoC제도에 관한 법적·제도적 구축은 시작 단계임
-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전기통신 및 전자파 적합성에 대하여 형식승인,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전자파 적합등록을 시행하고 있음

〈표 3-2〉 국내 전기전자 및 전기통신기기 인증제도 및 관련법규

구분	안전인증	형식승인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전자파 적합등록
관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기본법 • 동법시행령 • 동법시행규칙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 각종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법 • 전파법시행령 • 무선설비규칙 • 무선설비형식검정 형식등록규칙 • 각종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법 • 전파법시행령 • 전자파적합등록규칙 • 각종고시
인증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술시험원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전자파연구소 	전파연구소	전파연구소	전파연구소
대상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선 및 전원코드 • 전기기기용 스위치 • 교류용 전기기기 또는 전원용 캐패시터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 절연 변압기 • 전기 기기류 • 전동공구 •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 정보 사무기기 • 조명기기 	전기통신기자재	무선기기	전자파장해기기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자료: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www.kats.go.kr, 정보통신 인증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전파연구소·경원대학교, 2006. 11. 30, p.44.에서 정리

- 그러나, SDoC제도 도입 및 적용이 국제적인 추세이고, 동 제도로 인한 비용 절감, 가격인하, 유통에 걸리는 시간단축 등 우리나라 전기·전자 제품의 시장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는바²²⁾ 동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임
 - 하지만, 국내적으로 동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신뢰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정부는 위해정도가 낮은 일부품목에 한하여 지정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하고 그 제품을 관련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전기용품자율안전확인제도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면서 관련 개정법안이 최근(2007. 11. 22)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전자관보를 통해 이를 개정·공포하였음(2007. 12. 21)
 - 개정된 법률에서 전기용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제도가 도입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첨부 2 참조). 즉,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제품시험만으로도 그 위험 및 장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을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정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당 전기용품에 자율안전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함
 - 전기용품안전관리 대상을 크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위험 및 장애의 발생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그리고 ‘그 밖의 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혹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적용되지 않는 전기용품)’으로 나누어 전기용품의 적합성평가를 실시함

22) Per Döfnäs, "A manufacturer's experiences: Transition to SDoC in the IT/Telecom sector in the European Communities," WTO TBT Workshop on SDoC, 2005, <http://www.wto.org>.

(3) 형태 및 도입 시기의 문제

- 그동안 양측은 국제표준 및 정보기기 적합성 평가에 대하여 상당한 의견 일치를 보였는데 반해, 전기용품 분야 특히 전기용품의 공급자적합성선언(SDoC)에 대해서는 공통점을 찾기 어려움
- EU 제도와 비교해 볼때 우리나라도 높은 수준의 SDoC(Type IV: 시험기관의 지정여부 및 등록 여부 등 두 개의 요소(two parameters)를 조합한 것 중에서 가장 순수한 의미로 제3자의 간섭이 없는 형태) 도입에 대한 요청을 예상할 수 있음
 - 이는 지정된 시험기관에서의 시험실시 요건을 완화하여 EU의 민간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시험성적서를 수용하고, 제품 등록의 철폐와 더불어 MOU 체결기관의 경우 시험성적서 면제를 요구하는 형태임
- 그러나 우리나라 제도를 고려할 때, 관련법 개정 및 관련 산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낮은 수준의 SDoC(Type I) 도입이 필요함
 - 정부가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제품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신고 유효기간은 신고한 날부터 5년으로 함

〈표 3-3〉 SDoC의 4가지 유형

구분	기 준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시험실시	시험결과 등을 등록
Type-I	○	○
Type-II	○	X
Type-III	X	○
Type-IV	X	X

자료: 정보통신 인증 및 시험기관 지정제도 개선 연구, p.81

- 현재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SDoC의 기본방향에 대해 EU도 큰 반대를 할 이유는 없음
 - 적용범위에 대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대상 중 일정품목에 대해서는 자율안전확인제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품목은 현행제도, 즉 안전인증제도를 유지함. 그러나 양국 간에 안전인증제도를 유지하려는 품목에 대한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적합성평가절차
 - 적합성평가절차(SDoC)를 도입하기 위한 전환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의 적합성평가에 대하여 현행제도를 유지
 - 적합성평가 형태에 대해서는 한국의 안전인증기관과 MOU를 체결한 EU 기관의 자율안전확인품목에 대한 시험결과를 인정하고, 그 시험결과에 따른 시험 성적서 제출 및 검토절차를 유지
 - SDoC 도입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기로 SDoC도입을 검토

4. WTO 무역기술장벽 동향 및 EU의 무역기술장벽

가. 무역기술장벽의 동향

□ 무역기술장벽의 주요요소와 유형

- 무역기술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 기술규제의 주요 요소들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음
 - 기술규정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술장벽은 차별적인 기준의 적용(자국제품과 수입품간 또는 서로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품간), 다자무역규범에서 인정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 이상의 지나친 기술요건,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투명성이 결여된 규제와 절차, 기술규정의 부재 등임
 - 표준과 관련하여서는 표준의 준수자체가 자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표준화기구나 단체 등에서 설정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법으로 강제화하거나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차별적인 선택에 의해 실질적인 강제성이 부여됨으로써 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 대표적임
 - 적합성평가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양국간 기술규정, 표준 또는 시험, 인증절차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국에서 중복적인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와 검사지연, 관련비용 과다, 불투명한 절차 등이 흔히 기술장벽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 외에도 상품표시부착(labeling)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까다로운 표시요건 등이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 4-1〉 WTO TBT 협정의 주요요소 및 정의

주요요소	정 의
기술규정	적용 가능한 행정규정 등을 포함하여 법률 또는 법규에 의해 강제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술규격,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
표준	준수가 강제적이지 않는 기술규격,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
적합성평가절차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

자료: WTO TBT 협정 참조

- 한편, 기술규제는 일반적으로 주권국가가 다자무역규범상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국가안보, 자국민의 안전과 동·식물의 생명, 건강 및 환경보호, 기만적 행위 방지 등 매우 포괄적인 이유들을 근거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역장벽으로서 기능을 하는지 여부와 그 경제적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무역기술장벽의 동향 및 주요 관련품목

- 무역기술장벽의 동향과 특성은 WTO 출범 이후 WTO 회원국들이 TBT 협정에 따라 사무국에 통보한 통보문과 WTO TBT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 및 분쟁사례 등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음
 - WTO의 TBT 협정에 따라 회원국들은 상대국의 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자국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제정 또는 개정내용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동 통보문은 잠재적인 무역기술장벽으로서 관련 동향의 파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동 통보문에 따르면, 최근 무역기술장벽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특징을 찾아볼 수 있음

- 첫째, 무역기술장벽은 일반적으로 우월한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들에 의해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괄하는 모든 국가들에 빠르게 확산 및 널리 활용되고 있음
- 예를 들면, WTO 회원국들이 WTO 사무국에 제출한 기술규제와 관련한 통보문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매년 평균 약 600여건에 달하며, 개발도상국들의 통보건수의 비중이 1995년 27.9%로부터 점차 증가하여 2007년 70.6%로 선진국을 크게 앞서고 있음
- 또한, 지역분포면에서도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동유럽 국가로 널리 확산되고 있음²³⁾
- 둘째, 무역기술장벽은 신기술 및 특정의 첨단제품에 집중되지 않고, 교역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제품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설정되고 있음
- 즉, WTO 사무국에 제출된 통보문에 나타난 많은 기술규제들은 대부분 음료 및 가공식품, 소비재공산품, 일차산품, 원재료 등 기존의 제품, 기존의 기술적인 측면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²⁴⁾
- 셋째, 무역기술장벽은 무역거래의 대상이 되는 사실상 모든 품목의 성능, 품질, 특성뿐 아니라 제품특성과 관련된 공정 및 생산방법 그리고 상품표시 부착 등과도 관련되어 있음
- 넷째, 무역기술장벽은 구체적으로 설정된 기술규정이나 표준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이 그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 및 보증하는 적합성평가절차

23) WTO 회원국들의 기술규제와 관련한 통보문의 제출은 기본적으로 기술규제 및 그 도입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TBT 관련 통보문의 증가는 일차적으로 투명성 증가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파악될 수 있는 반면, 대부분의 통보문들이 그 내용면에서는 기술규제의 신규도입 또는 기존규제의 강화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무역기술장벽의 심화로 볼 수 있음

24) 2001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기술규제와 관련 통보문은 총2,554건에 달하며, 그 가운데 품목별로는 음료 및 가공식품 18.4%, 소비재공산품 9.5%, 일차산품 5.6% 및 원재료 5.0% 등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에서도 기인하며, 적합성평가절차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 즉, WTO 회원국들의 기술규제 관련 전체 통보문에서 적합성평가절차에 관한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WTO 출범 초기 약 2~5%에서 최근 12~16%로 증가하고 있음
 - 또한, WTO TBT 위원회의 다자간 논의의 의제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적합성평가절차에 관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현상을 보이고 있음

나. EU의 무역기술장벽

- EU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반덤핑규제와 함께 제품인증과 관련된 문제임
 - EU의 통합규격인 유럽공동체 인증마크(Communautés Européenne: CE)의 취득에 소요되는 과도한 절차, 시간 및 비용 등으로 인하여 우리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재 CE 마크 인증은 건축자재, 압력용기, 통신단말기, 위성수신기기, 의료장비 등 20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특히, EU회원국들은 일부 품목에 있어 독자적인 기술규정, 표준, 시험 및 인증절차를 유지하고 있어, EU내에서 이들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EU는 일부 제품군에 대한 공동표준 개발 및 기술적 조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회원국간 조화된 법률 도입의 지연, 법 적용 및 해석상의 부조화, 특정부분을 다루는 지침간의 중복 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와 관련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EU와의 양자간 상호인정협정(MRA)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 한정되어 있음
- 세부적인 기술규정과 관련하여 EU는 안전, 환경보호, 폐기물처리, 에너지효율성 등과 관련하여 선도적인 높은 수준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화학물질 신관리지침(REACH), 전기전자제품 폐기지침(WEEE)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자동차 폐차지침 및 배출가스 규제, 유해물질 사용 제한지침, 전지류 관리지침, 포장재 폐기지침, 친환경 라벨규제(Eco-Label) 등이 대표적인 예임

5. 환경문제와 기술표준

가. 환경과 국제무역

- 국가간 무역에 있어서 환경관련 규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빠르게 부상해오고 있음
 - 이에 따라 다자간 및 양자간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들에서 환경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포함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환경문제가 중요한 이유
 - 환경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 또는 그러한 물질을 포함한 제품의 국경간 이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 또한,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되지 않은 제품의 무역이 국가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국내환경뿐 아니라 국내 관련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
 - 그 외에도 환경관련 규제는 동등한 국내제품보다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될 때 국가간 무역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규범에서 환경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음
- 한편, 환경관련 문제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서뿐 아니라 국가간, 특히 기술격차가 확연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기술협력의 중요한 대상이기도 함
 - 환경관련 규제와 그에 대한 대응은 다자 및 양자간 무역관계에 있어서 기술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

- 다자무역체제에서 무역과 환경문제의 논의는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체제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계기로 부상
 - 주로 상품분야의 관세인하로부터 서비스, 반덤핑, 원산지, 분쟁해결제도 등 자유무역의 범위 확대 및 공정한 무역질서 구축을 추구하고, 이후 투자, 경쟁 정책, 노동기준 등과 함께 새로운 통상문제로서 부상함
- 무역과 환경문제의 다자간 논의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무역및환경합동전문가회의(Joint Working Party on Trade and Environment: JWPTe)에서 진전이 이루어졌음
 - 또한, 구체적인 규범화 등에 대한 논의는 WTO의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를 비롯한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 관련 국제무역 및 개발기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이들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는 다자간 무역과 환경문제의 규범화와 관련 규제의 합리화에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OECD의 JWPTe는 무역위원회와 환경위원회의 공동 주관으로 정례회의를 통해 무역과 환경간의 연계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1991년 구성되었음
 - JWPTe에서의 논의는 제품의 공정과 생산방법(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에 따른 환경규제, 제품의 생산에서 소비 및 폐기까지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life cycle)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환경보호 목적의 조세에 대한 국경조치 등 환경과 무역관련 분석작업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전되어 왔음

- 한편, WTO의 CTE에서는 무역자유화의 원칙을 전제로 환경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그로 인한 무역왜곡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음
- WTO의 다자무역체제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갖는 중요한 시사점은 GATT 체제하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까지 여덟 차례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상을 통하여 관세장벽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환경보호를 포함한 기술표준의 문제가 빠르게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임
- 즉, 환경보호는 WTO 규범상 각국이 무역관련 기술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 가운데 하나이며, 특히 상품의 성능과 관련된 특성뿐 아니라 관련 공정과 제조방법에 대해서도 기술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는 상품의 성능과 관련된 특성과 관련 공정 및 제조방법은 물론 제품의 사용 그리고 폐기에 이르기까지 상품의 전체 수명주기를 포괄하게 되었음

나. EU의 환경관련 기술표준

- EU는 회원국간 통합 및 단일의 유럽시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기술표준과 환경규제제도의 조화를 위해, 그리고 서로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관련 기술표준에 있어서 선도적이고 강한 규제를 도입해오고 있음
- 또한, EU는 통합된 대규모 유럽시장을 기반으로 유럽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여 유럽 및 세계시장에서 유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음

- EU는 단일시장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과 회원국간 무역에 대한 수량규제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있음 (로마조약 제30~34조)
 - 한편, 의도적인 차별조치와 위장된 수입억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전제로 공중도덕, 공공정책 및 안보, 인간과 동식물의 건강과 생명보호, 문화유산의 보호, 산업 및 경제적 자산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각 회원국에 특정한 수출과 수입에 대한 규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환경관련 규제를 포함한 기술표준 규정에 있어서 회원국간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게 됨²⁵⁾
 - EU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이 EU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보건, 위생, 안전 및 환경 등)만을 명시하는 EU 차원의 지침(directive)을 제정하고, 그러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규격의 개발은 유럽표준화기구들(CEN, CENELEC, ESTI 등)에 맡기게 되었음
 - 해당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은 EU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유럽연합시장내에서 자유롭게 교역 및 유통될 수 있게 됨
 - 1993년부터는 이와 같은 새로운 지침들이 적용되는 제품들에 대해 EU내에서 해당제품이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을 허용하는 인증마크로서 CE 마크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 즉, CE 마크는 제품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에 해당되는

25) Article 36. The provisions of Arts. 30 to 34 shall not preclude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imports, exports or goods in transit justified on grounds of public morality, public policy or public security; the protection of health and life of humans, animals or plants; the protection of national treasures possessing artistic, historic or archaeological value; 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 Such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shall not, however,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between Member States.

지침서의 필수적인 기술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임

□ 최근 다자간무역기구인 WTO에 통보되고 논의되고 있는 EU의 기술표준관련 규제는 식품안전 및 표시, 자동차 안전 및 형식승인, 생활용품의 규격 등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상당수가 화학물질, 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제조, 사용 및 폐기 등과 관련된 환경보호 요건에 관한 것임²⁶⁾

○ 예를 들면, 2007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WTO에 통보된 유럽연합의 새로운 기술규제 또는 기존의 기술규제 개정에 관한 통보문은 총 64건이었으며, 그 가운데 환경보호 목적과 관련된 것이 32건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음

○ EU의 주요 환경관련 기술규제는 다음과 같음

□ 화학물질 신규제정책: REACH²⁷⁾

○ EU는 기존의 화학물질을 포함한 모든 화학물질을 회원국에서 생산 또는 회원국에 수입되는 양과 위험정도에 따라 등록(registration), 평가(evaluation) 또는 허가(authorization)를 요건으로 하는 화학물질 신규제정책(REACH)의 도입을 추진하여 금년 6월부터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있음

○ REACH는 제조자 및 수입자별로 연간 1톤 이상 EU시장에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공급망을 통한 정보제공의 강화; 연간 10톤을 초과하는 일부 대상 화학물질의 EU에 의한 평가; 발암물질, 유전자변형유발물질 등 약 2,500

26) WTO의 무역기술장벽에관한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협정) 제2.9조에 의하면 제안된 기술규정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회원국은 WTO 사무국을 통하여 제안된 기술규정의 목적과 정당한 이유에 관한 설명과 함께 동 기술규정이 적용될 상품 등에 대해 통보함

27) 남상열. 2005. 『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의 WTO 논의동향과 대응』,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87.

가지 고위험화학물질에 대한 허가 그리고 안전망을 위한 제한조치, 동 시스템을 관리할 중앙집중적 관리기구의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화학물질의 시험검사와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연간 1천톤을 초과하여 생산 또는 수입되는 HPV 화학물질(high production volume chemicals)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출된 정보가 REACH에 활용되며,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정보는 적절한 경우에만 인정됨
- 이에 대해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은 EU회원국 이외의 국가들에 대한 차별성, 등록대상물질의 광범위성, 제조업체의 제조기술 누출위험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동 규제정책이 초래할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적절한 고려, 관련절차의 투명성 제고, 고위험물질로 대상을 대폭 축소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시행시기의 연기를 주장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단순한 물리화학적 특성시험에 대해서는 국제시험소인정 협력체간 상호인정협정(ILAC MRA)에 의해 유럽연합 이외 지역의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결과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전기 및 전자기기 폐기물 처리지침: WEEE

- WEEE는 EU회원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전기 및 전자기기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시 환경 오염물질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 및 전자기기 폐기물의 환경적인 회수와 처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WEEE 지침의 발효에 따라 2005년 8월 13일 이후 시장에 출하되는 제품에 대해 제조자는 무료수거, 제품군별로 재생비율 의무화, 특정물질 분리 등의 의무를 짐

- 단, 2005년 8월 13일 이전에 시장에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비용이 발생하면 당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제조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각 기기별 시장점유율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전기전자제품을 10개 품목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로 회수, 부품 재사용 및 재활용 비율을 정하여 의무화하고 있으며, 2006년 말과 2008년 말의 두 단계로 적용됨
- 예를 들면, IT 및 통시기기는 의무재생비율 75%, 부품 재사용 및 재활용율 50%임(비율은 기기당 평균 중량 대비)
- 그 외에 PCB를 함유한 축전지, 수은을 함유한 부품, 전지, 인쇄회로, 토너 카트리지, 브롬 난연재를 함유한 플라스틱, 음극선관, CFC 등 특정 물질이나 부품은 제조업체가 제거하여 별도로 규정된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

□ 전기 및 전자기기 유해물질 제한: RoHS

- RoHS는 전기 및 전자기기의 처리 및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성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납, 수은, 6가 크롬, PBB, PBDE 및 카드뮴 등 특정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유해 정도가 낮은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임(2006년 7월 1일 시행)
- 주요 대상품목은 가정용기기, 정보통신기기, 소비자가전,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공구, 완구 및 스포츠용품, 자동판매기 등이며, 형광등의 수은, 땀납 및 축전지 등은 예외 또는 별도의 조항이 적용됨
- 이와 관련한 적합성평가, 즉 RoHS의 준수여부는 제조자적합성자기선언(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SDoC)에 따르도록 RoHS 시행 가이드(RoHS En-

forcement Guide)에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일반적인 SDoC의 경우와 같이 해당제품이 시장에 출하된 이후 회원국별 RoHS 담당기관이 사후적인 감시활동을 하게 됨

□ 에너지 사용제품(energy using products: EuP)의 환경친화적 설계

- EuP 지침은 운송수단을 제외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제품의 기능을 위해 에너지 투입이 필요한 제품, 에너지의 생성, 변환 및 측정을 위한 제품, 최종소비자에 개별 판매되는 EuP 부품 등)에 대해 제품의 설계와 개발에 환경친화적인 측면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임(2005년 8월 11일 발효)²⁸⁾
- 구체적인 이행요건은 제품군별로 개발되며, 우선대상 제품은 전원공급장치, 충전기, PC, TV, 기타 가전제품, 대기전력, 복사기 및 프린터 등임
- 한편, 이행요건의 시행은 제품개발을 위한 시간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2008년 하반기에서 2010년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폐차처리법: ELV

- ELV는 폐차처리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해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차종 개발시 폐차의 활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소/억제, 납, 카드뮴, 6가 크롬, 수은 등 유해물질과 중금속 사용 제한 및 규제의 지속적인 강화를 추진하는 것임(2000년 1월 발효)

28)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환경배려 설계 국제표준가이드북,” 2007, 3, <http://www.kats.go.kr>

- 적용대상은 9인승 이하 승용차, 차량 총중량 3.5톤 이하의 트럭 및 예비부품과 교체부품을 포함함
- 2002년 7월 이후 판매차량은 무상으로 폐차회수를 하며, 그 이전에 판매한 차량은 2007년 1월부터 무상으로 회수해야 함
- 또한, 재사용 및 재활용 비율은 2006년 1월까지 각각 80% 및 85%, 2015년 1월까지 각각 85% 및 95%를 충족해야 함

6. 결론 및 시사점

가. 기술표준 분야 이슈

- 정부조달
 - 정부조달과 TBT 챕터의 범위 문제는 원칙적으로 WTO 규정상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되는 부분임
 - 다만, FTA라는 양자적 특수성 및 다른 조항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한-EU 상호간 적절한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
- 제도이행의 일관성
 - EU 역내 회원국과 EU 차원의 기술규정 이행의 조화로운 일관성 문제는 EC 조약의 해석상 EU 측에 강제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EU측 주장의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EU에 요구하고 제도이행을 위해 협력한다는 선언적 조항을 얻어내는 정도는 현실적으로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음
- labelling
 - 재정목적의 라벨링은 WTO 규정 해석상 문제의 소지가 없음
 - Made in EU 원산지 표시는 매우 민감한 이슈로 여전히 양측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만큼 협상 전체적인 이익 차원에서 신중히 고려할 필요
- 적합성평가제도
 - 적합성평가제도와 관련 형태 및 인증절차, 도입시기 등에 있어 양측간 차이가 존재
 - 그러나 이는 양측간 제도상의 차이 문제이며, 이를 상호 인정하고 중간 접점을 확인하여 협의할 필요

나. 정책적 시사점

- 협상쟁점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것은 상당부분 한-EU 간 제도적 차이에서 기인
 - 기술장벽 규제분야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EU의 목표와 개별회원국의 제도적 특성 및 진행중에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표준 제도 변화에 대한 충분한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실제 협상 전략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할 필요
 - 한-미 FTA 협상 결과의 이상을 요구하는 EU와 그 이하로 마무리하려는 우리측의 협상 진행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
 - 환경문제도 기술표준과 관련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작용가능한 여지가 있는 규제 조치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WTO 차원의 보완적 대비도 필요

-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EU가 고수하는 원산지 문제에 대한 주장을 희석시킬 수 있는 협상 레버리지 증대 방안을 남은 협상기간 동안 강구할 필요

- 기술장벽 분야의 협상쟁점과 관련한 동 분야 전문가 및 업계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다수가 한-EU FTA로 인해 양측의 제도간 조화 및 투명화가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바, 기업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함
 - 한편 소수의 부정적인 우려에 대해서도 대비하여 잠재영향 평가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조속한 FTA 체결이라는 목표에만 치중할 때 협상 결과도 우리측에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내용에 충실한 협상을 진행해야 함

참 고 문 헌

- 강하연·김성웅·박민정, 한-EU FTA 주요 협상이슈에 관한 소고, KISDI이슈리포트, 2007. 11.
- 김성웅, 2007 美무역장벽보고서에 제기된 EU의 통신시장 무역장벽, 정보통신정책(제19권 14호 통권421호), 2007. 8.
- 김대순, 국제법론, 2002(제7판).
- 김도훈 외(1996), WTO의 평가와 신통상 이슈, 산업연구원, 12월.
- 남상열, 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의 WTO 논의 동향과 대응(정책연구 05-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12.
- 산업기술시험원, 공급자 적합성 선언제도 도입 방안 연구, 기술표준원, 2003. 11.
- 외교통상부, 우루과이라운드 다자무역협상 결과(국문협정문집), 2000. 8.
- _____, 2006년판 외국의 통상환경, 2006. 12.
- 전파연구원·경원대학교, 정보통신 인증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2006. 11.
- 정인교, 한미 FTA 협정 내용, 경제효과 및 정책시사점, 자유기업원 CFE리포트, 2008. 5. 30.
- 한국표준협회, 미래사회와 표준, 2007. 8.
- KIEP, 동시다발적 FTA의 경제적 효과, 2007. 7.
- 세계지역연구회 세미나, 한-EU FTA의 효과와 예상현안: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유럽 07-05), KIEP, 2007. 7.
- 남상열·김성웅 외, 한-EU FTA가 우리나라 기술표준제도의 선진화와 투명화에 미치는 영향, KISDI, 2007. 12.
- Rüdiger Wolfrum, Peter-Tobias Stoll, Anja Seibert-Fohr, WTO-Technical Barriers and SPS Measures, Leiden · Boston, 2007.
- WTO,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1995.
- John H. Jackson, The World Trading System-Law and Policy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The MIT Press, 1998

Per Döfnäs, "A manufacturer's experiences: Transition to SDoC in the IT/Telecom sector in the European Communities," WTO TBT Workshop on SDoC, 2005, <http://www.wto.org>.

Hartley, The Foundations of European Community Law, 2003.

Steiner, Woods & Twigg-Flesner, EU Law, 2006.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백서

_____,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한글/영문)

_____, 「전기제품 안전관리」 기업이 책임지고 소비자가 감시한다

_____, 전기용품안전관리법(2005)

_____,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중 개정법률안(2007)

_____, 중소기업을 위한 전기전자 제품의 환경배려설계 국제표준 가이드

_____, EU의 법체계 및 표준과의 관계

_____, WTO TBT협정

_____, 국제환경규제, 표준화와 그 대응동향, 2006. 12.

외교통상부, 한·EU FTA 제1차-7차 협상 결과, 2007. 6~2008. 6.

재정경제부,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기대효과, 2007. 4.

정보통신부, 전기통신기본법(2007)

_____, 전파법(2007)

EU Directive, Low Voltage Directive, Council Directive 73/23/EEC, dated 19 February 1973.

_____, Low Voltage Directive, directive 2006/95/EC/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dated 12 December 2006.

_____, EMC Directive, Council Directive 89/336/EEC, dated 3 May 1989.

_____, Amending Directive, Council Directive 93/68/EEC, dated 22 July 1993.

_____, EMC Directive, directive 2004/10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 and of the Council,, dated 15 December 2004.
- European Commission, Guidance to the Implementation of directive based on the New Approach and the Global Approach, 2000.
- _____,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Directive 2006/95/EC.
- _____, EU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the Directive 89/336/EEC.
- World Trade Report, Trade, Standards and the WTO-Institutions and Policy Issues, 2005.
-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fta.go.kr/> 자유무역협정.
- 외교부 FTA 추진단 홈페이지 <http://www.fta.go.kr>
- 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www.kita.net> 무역통계자료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통계정보
- 외교부 보도자료,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2100-8127), 2006. 2. 6
- _____, 외교부 대변인, 2007. 8. 9
- _____, FTA교섭총괄과(제07-726호), 2007. 11. 16.
- _____, FTA교섭총괄과(제07-732호), 2007. 11. 21.
-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7. 9. 21.
- 서울경제신문 보도자료, 2007. 12. 4.
- 포르투갈 섬유산업회 면담 종합, EU, 수입제품 원산지 표시제 본격 논의될 듯, 2005. 11.
- KOTRA 브뤼셀 무역관, EU 새로운 식품라벨 규정 마련(표기의무 성분과 표기방법 의무화, 규정발효 3년 후 실제 시행), 2008. 2. 14.

〈별첨 1〉

【한-EU 교역현황】

(단위: 백만불, %)

구분	'02	'03	'04	'05	'06	'07. 1~8
수출	21,694 (△10.5)	24,887 (△14.7)	37,830 (△52.0)	43,660 (△15.4)	48,450 (△11.0)	36,514 (△18.9)
수입	17,107 (△14.7)	19,380 (△13.3)	24,187 (△24.8)	27,295 (△12.9)	30,110 (△10.3)	24,048 (△23.0)
총교역량	38,801 (△12.3)	44,267 (△14.1)	62,017 (△40.1)	70,955 (△14.4)	78,560 (△10.7)	60,562 (△20.5)
무역수지	4,587	5,507	13,643	16,365	18,340	12,466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교역 증가율

- 대EU 수출: '03(14.7%) → '04(52%) → '05(15.4%) → '06(12.8%)

- 대EU 수입: '03(13.3%) → '04(24.7%) → '05(12.9%) → '06(10.5%)

【한국의 5대 수출입 상대국과의 교역현황】(2006)

(단위: 백만불)

순위	국가	수출		수입		총교역	
		'05	'06	'05	'06	'05	'06
1	중국	10,058	6위	11,337	6위	21,421	6위
2	EU	5,636	9위	3,218	20위	8,612	16위
3	미국	4,299	15위	3,022	22위	7,202	20위
4	ASEAN	3,616	20위	2,977	23위	6,635	23위
5	일본	3,417	22위	2,915	24위	6,635	24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EU의 대한투자】(2006)

(단위: 백만불)

연도	'00	'01	'02	'03	'04	'05	'06	누계('62~'06)
EU의 투자액	4,396	3,064	1,680	3,062	3,009	4,780	4,977	40,460
미국의 투자액	2,922	3,889	4,500	1,240	4,717	2,690	1,701	36,632
일본의 투자액	2,448	772	1,403	541	2,258	1,878	2,108	19,514
중국의 투자액	76	70	249	50	1,165	68	40	1,795

자료: 산업자원부

【한국의 대EU 투자】(2006)

(단위: 백만불)

연도	'01		'02		'03		'04		'05		'06		누계('68~'0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EU투자	59	2,246	59	1,087	57	290	76	732	117	680	131	2,702.7	1,075	13,386.7
대미국	518	1,837	475	1,417	581	730	835	1,425	1,094	1,404.2	1,274	2,148.8	7,540	20,667.1
대중국	1,125	991	1,534	2,060	1,819	2,692	2,233	3,634	2,265	3,501.6	2,291	4,504.3	17,837	25,453.9
대ASEAN	217	500	265	433	206	1,192	305	686	438	890.7	721	3,687.1	4,603	16,188.3
대일본	119	95	84	92	67	50	114	328	137	209.2	185	289.1	1,172	1,773.1

자료: 한국수출은행, 신고기준

【한국의 대EU 주요 교역 품목】(2006)

(단위: MTI 3단위, 백만불, %)

수출				수입			
품목	금액	증감율	비중	품목	금액	증감율	비중
자동차	9,163	10.2	18.9	반도체제조용장비	1,676	21.9	5.6
무선통신기기	7,600	-11.2	15.7	자동차	1,624	48.7	5.4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7,437	24.5	15.3	반도체	1,399	-0.1	4.6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3,132	128.3	6.5	농약 및 의약품	1,334	30.4	4.4
반도체	2,755	25.1	5.7	자동차부품	1,270	3.1	4.2
컴퓨터	2,108	-20.9	4.4	계측제어분석기	1,147	0.6	3.8
영상기기	2,092	-7.5	4.3	원동기 및 펌프	1,104	23.4	3.7
건설광산기계	1,105	41.2	2.3	기계요소	1,093	11.8	3.6
자동차부품	983	48.7	2.0	정밀화학원료	782	14.5	2.6
철강판	868	208.7	1.8	기타화학공업제품	761	17.9	2.5
전체 총계	48,450	11.0		전체 총계	30,110	10.3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			76.9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			40.5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EU FTA 체결시 기대효과】

- EU(4.2%)는 미국(3.7%)에 비해 평균관세율이 높고,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10%), TV등 영상기기(14%), 섬유·신발(최고 12~17%) 등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업계에 상당한 규모의 가시적 혜택이 발생
 - 이러한 이유로 日本 업계에서는 한-미 FTA보다 한-EU FTA 협상개시를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경단련을 위시한 일 재계는 정부에 대해 日-EU FTA 협상개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의 GDP증가가 예상되며, 고

용창출효과는 한-미 FTA보다 클 것으로 기대됨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한-미 FTA와의 비교]

	생산성효과 미고려			생산성효과 고려		
	한-EU	한-미	EU+미국	한-EU	한-미	EU+미국
실질GDP	1.26%	1.28%	2.83%	6.01%	5.97%	7.61%
후생수준	58억불	40억불	112억불	222억불	209억불	277억불
고용	10만8천명	8만3천명	22만6천명	43만3천명	33만6천명	55만3천명

자료: KIEP, "동시다발적 FTA의 경제적 효과," 2007. 7

〈별첨 2〉

[EC 조약 제 133조]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TITLE IX COMMON COMMERCIAL POLICY

Article 133

1.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shall be based on uniform principles, particularly in regard to changes in tariff rates, the conclusion of tariff and trade agreements, the achievement of uniformity in measures of liberalisation, export policy and measures to protect trade such as those to be taken in the event of dumping or subsidies.
2. The Commission shall submit proposals to the Council for implementing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3. Where agreements with one or more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need to be negotiated, the Commission shall make recommendations to the Council, which shall authorise the Commission to open the necessary negotiations. The Council and the Commission shall be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the agreements negotiated are compatible with internal Community policies and rules. The Commission shall conduct these negotiations in consultation with a special committee appointed by the Council to assist the Commission in this task and within the framework of such directives as the Council may issue to it. The Commission shall report regularly to the special committee on the progress of negotiations. The relevant provisions of Article 300 shall apply.
4. In exercising the powers conferred upon it by this Article, the Council shall act by a qualified majority.
5. Paragraphs 1 to 4 shall also apply to the negotiation and conclusion of agreements in the fields of trade in services and the commercial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in so far as those agreements are not covered by the said paragraphs and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6. By way of derogation from paragraph 4, the Council shall act unanimously when negotiating and concluding an agreement in one of the fields referred to in the first subparagraph, where that agreement includes provisions for which unanimity is required for the adoption of internal rules or where it relates to a field in which the Community has not yet exercised the powers conferred upon it by this Treaty by adopting internal rules. The Council shall act unanimously with respect to the negotiation and conclusion of a horizontal

agreement insofar as it also concerns the preceding subparagraph or the second subparagraph of paragraph 6.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right of the Member States to maintain and conclude agreements with third countries o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n so far as such agreements comply with Community law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6. An agreement may not be concluded by the Council if it includes provisions which would go beyond the Community's internal powers, in particular by leading to harmonisation of the laws or regulations of the Member States in an area for which this Treaty rules out such harmonisation. In this regard, by way of derogation from the first subparagraph of paragraph 5, agreements relating to trade in cultural and audiovisual services, educational services, and social and human health services, shall fall within the shared competence of the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Consequently, in addition to a Community decision take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rticle 300, the negotiation of such agreements shall require the common accord of the Member States. Agreements thus negotiated shall be concluded jointly by the Community and the Member States. The negotiation and conclus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in the field of transport shall continue to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itle V and Article 300.
7. Without prejudice to the first subparagraph of paragraph 6, the Council, acting unanimously on a proposal from the Commission and after consulting the European Parliament, may extend the application of paragraphs 1 to 4 to international negotiations and agreements on intellectual property in so far as they are not covered by paragraph 5.

〈별첨 3〉

[한국과 EU의 인증관련 법령 및 지침]

○ 한국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2007. 12. 21 개정공포, 2009. 1. 1 시행)	
조항	법령
제2조의3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4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제품시험만으로도 그 위험 및 장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안전인증)	<p>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거나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개발, 수출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조(안전인증 등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자원부 장관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안전검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제품시험(이하 “자율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2007. 12. 21 개정공포, 2009. 1. 1 시행)	
조항	법 령
제11조(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신고 등)	<p>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과 그 신고(이하 “자율안전확인 신고등”이라 한다)를 면제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개발, 수출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5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을 제외한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p>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이라 한다) 외의 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p>
부칙 제2조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p>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외의 전기용품이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규정된 경우 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하여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중개정법률안』(2009. 1. 1 시행)	
조항	법 령
제2조의4	<p>“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라 함은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등의 위험 및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중 제품시험만으로도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제5조의3(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신고 등)	<p>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스스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제 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당해 전기용품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중개정법률안」(2009. 1. 1 시행)	
조항	법령
전파법	
제46조(형식 검정 및 형식등록 등)	<p>① 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하는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수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무선설비 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대상기기에 대하여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자는 그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이를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식검정 합격 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를 하여야 한다.</p>
제46조의2(성능 시험기관의 지정 등)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을 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의4(형식 등록 및 형식 검정과 전자파 적합등록의 국가간 상호인정)	무선설비 기기의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국가간 상호인정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의3조를 준용한다.
제57조(전자파 적합등록)	<p>① 전자파장해기기 또는 전저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기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적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수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법에 의한 전자파적합의 등록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검정 등을 받은 기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공산품 4.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 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6.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기기 7. 「의료기기법」에 의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 유럽연합

DIRECTIVE 2006/95/EC – on electrical equipment designed for use within certain voltage limits(LVD)	
Article 8	<p>1. Before being placed on the market, the electrical equipment must have affixed to it the CE marking provided for in Article 10 attesting to its conformity to the provisions of this Directive, including the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p> <p>2. In the event of a challenge, the manufacturer or importer may submit a reports, drawn up by a body, which is notif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first paragraph, point(b), on the conformity of the electrical equipment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p> <p>3. Where electrical equipment is subject to other Directives concerning other aspects which also provide for the affixing of the CE marking, the latter shall indicate that the equipment in question is also presumed to conform to the provisions of those other Directives.</p> <p>However, where one or more of these Directives allow the manufacturer, during a transitional period, to choose which arrangements to apply, the CE marking shall indicate conformity to the provisions only of those Directives applied by the manufacturer. In this case, particulars of the Directives applied, as published in the <i>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i>, must be given in the documents, notices or instructions required by the Directives and accompanying the electrical equipment.</p>
Directive 2004/108/EC – on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EMC 신지침)	
Article 7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for apparatus)	Compliance of apparatus with the essential requirements referred to in Annex I shall be demonstrated by means of the procedure described in Annex II (internal production control). However, at the discretion of the manufacturer or of his authorised representative in the Community, the procedure described in Annex III may also be followed.

〈별첨 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중 신설된 전기용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제도 관련 법령(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2007. 12. 21 개정공포, 2009. 1. 1 시행)

조항	법령
제11조(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신고 등)	<p>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과 그 신고(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이라 한다)를 면제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개발, 수출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②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④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한다.</p>
제12조(안전검사)	<p>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또는 대여하려는 자는 수입한 중고 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받은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p>

조항	법령
제13조(자율 안전확인 신고등의 표시 등)	<p>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와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받은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시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의 표시와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p>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4.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 5.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수입·판매·대여업자
제14조(자율 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 확인대상전기 용품의 판매· 사용 등의 금지)	<p>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대여업자는 자율안전 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